

편저자 : 송 광 호

※ 정오 및 오텔지를 수정합니다. 추가로 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교체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21~22에 있는 표 내용 중 시설등의 기준 – (2)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시설 등의 기준	(2) 「경비업법 시행령」[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 등의 기준	시설경비업무	•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호송경비업무	• 무술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신변보호업무	• 무술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기계경비업무	• 전자 · 통신 분야 기 술자격증소지자 5명 을 포함한 일반경비 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 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관제시설	• 감지장치 · 송신장치 및 수 신장치 •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비고]

1.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 · 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 p.25에 있는 표 내용 중 결격사유 – 특수경비원 – (1)–④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결격사유	특수경비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

- ▶ p.25에 있는 표 내용 중 의무 – 일반경비원의 의무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그대로 유지	전체경비원의 의무	내용그대로 유지
--------	-----------	----------

- ▶ p.26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 명부 – (2)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명부	(2)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① 주된 사무소,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③ 집단민원현장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및 ③ 집단민원현장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함)를 작성·비치 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경비원의 명부)].
---------------	----	---

- ▶ p.27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 배치 및 배치 폐지신고 – (2), (3), (4)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1)은 그대로 유지 (2)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및 제3호(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제1항]. (3) (2)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제2항]. (4) 집단민원현장에의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①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 신청서"라 함)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②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④ ②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

		<p>⑤ ②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⑥ ②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	--	---

- ▶ p.27~28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 배치 및 배치 폐지신고 – (5) – ②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배치 및 배치 폐지신고	<p>② 경비원 중 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에 따른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p>
---------------	--------------	--

- ▶ p.28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 배치 및 배치 폐지신고 – (8)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배치 및 배치 폐지신고	<p>(8)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차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함)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①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	--------------	---

- ▶ p.31~32에 있는 표 내용 중 복장 – (1), (2), (4)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복장 등		<p>(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제1항)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함)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제1항)).</p> <p>(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제2항). →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제4항).</p> <p>(3)은 그대로 유지</p> <p>(4) (3)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함(『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제4항).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 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함)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제2항).</p>
------	--	---

- ② 경비업자는 ①에 따른 신고서(복장신고서 또는 복장변경신고서) 또는 ①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제3항].
- (5)는 그대로 유지

▶ p.32~33에 있는 표 내용 중 장비 등 – (6)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 (6) 경비원의 휴대장비[『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음.
- ② ①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름.

	장비	비고
복장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
	분사기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무전기	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수신이 가능한 것
	안전모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식 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방검복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규제의 재검토 :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 p.33에 있는 표 내용 중 출동차량 등 – (2), (4)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 (1)은 그대로 유지
- (2)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경비업법』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제2항].
-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함)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1항].
- (3)은 그대로 유지
- (4) (3)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함[『경비업법』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제4항].
- 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2항].

- ② 경비업자는 출동차량등 신고서 또는 출동차량 등 변경신고서 및 ①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자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3항].

(5)는 그대로 유지

▶ p.33~35에 있는 표 내용 중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 교육 등 – (1)~(11)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p>(1)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③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p>(2) (1)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p>(3)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자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4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항].</p> <p>(4)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3)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4항].</p> <p>(5)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2항] :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 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함.</p> <p>(6)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음[『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1항].</p> <p>(7)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2항].</p> <p>(8)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6)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4항].</p>
--------------	--

	<p>※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3항 삭제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다만, ①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과 ②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됨.</p> <p>(9)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6)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5항].</p> <p>(10)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개정 2011.1.26> *표는 그대로 유지</p>
--	--

- ▶ p.35~38에 있는 표 내용 중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 교육 등 – (2),(3),(4),(9),(14)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교육 등	<p>(2) (1)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p> <p>(3)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6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항].</p> <p>(4) (1)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4항].</p> <p>(5)~(8)은 그대로 유지</p> <p>(9)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음[「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제1항].</p> <p>(10)~(13)은 그대로 유지</p> <p>(14)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3항].</p>
--------------	------	---

- ▶ p.39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업자의 의무 –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 (3)~(5)번을 추가해주세요.
<개정 2015.10.21>

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p>(1)~(2)는 그대로 유지</p> <p>(3) (1) 및 (2)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경비업법」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3항].</p> <p>(4) (3)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경비업법」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4항].</p> <p>(5)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 다음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p> <p>①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는 제외 한다), 호송경비업무 또는 기계경비업무</p> <p>②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p>
----------	----------------	--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 ② 특수경비업무
- ⑤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 ③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 ⑦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⑧ 「경비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 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p.39~41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업자의 의무 –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 (3),(7)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업자의 의무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1)~(2)는 그대로 유지																		
		(3)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2)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함 → 이 경우 (2)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8항].																		
		(4)~(6)은 그대로 유지																		
		(7)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경비관련업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th>해당영업</th></tr> </thead> <tbody> <tr> <td>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금고 제조업 </td></tr> <tr> <td>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td></tr> <tr> <td>전기장비 제조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td></tr> <tr> <td>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카드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td></tr> <tr> <td>전문직별 공사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td></tr> <tr> <td>도매 및 상품증개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td></tr> <tr> <td>통신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업 </td></tr> <tr> <td>부동산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관리업 </td></tr> <tr> <td>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td></tr> </tbody> </table>	분야	해당영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금고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카드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도매 및 상품증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업 	부동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관리업
분야	해당영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금고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카드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도매 및 상품증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업 																			
부동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p>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소방시설 설계 등 방재 관련 건축설계에 한정한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방공사 감리 등 방재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p>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p>사업지원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p>교육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훈련기관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경비 관련 교육에 한정 한다) <p>수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기계 수리업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p>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운영업
		<p>② 그 밖에 ①에 의한 경비관련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 · 고시한 경비관 련업</p>

- ▶ p.41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업자의 의무 –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 대응체제 – (2)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대응체제	(1)은 그대로 유지 (2)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	---------------	------	--

- ▶ p.42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업자의 의무 –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 출동차량의 도색 등 – (1)~(3)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출동차량의 도색 등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함)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1항]. (2)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2항]. (3) 경비업자는 (1)에 따른 신고서 및 (2)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자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2항].
-------------	---------------	---------------	--

- ▶ p.45에 있는 표 내용 중 시험 등 – 시험방법 및 과목 – (8)을 삭제해주세요.

시험 등	시험방법 및 과목	(8)번 삭제
------	-----------	---------

- ▶ p.48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지도사의 직무 – (3)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지도사의 직무	(3)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3항].
-----------	---

- ▶ p.49에 있는 표 내용 중 설립 – 목적 – (2)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설립	목적	(2) 경비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26조(경비협회) 제1항]. {↔ 경비업자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	---

- ▶ p.50에 있는 표 내용 중 특수경비업의 시설기준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특수경비업의 시설기준	(1) 경비인력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2) 자본금 :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 시설 :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	--

- ▶ p.50~51에 있는 표 내용 중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 (3), (7)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1)~(2)는 그대로 유지	
	(3)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1)에 의한 경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함 → 이 경우 (2)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8항].	
	(4)~(6)은 그대로 유지	
	(7)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경비관련업	
	분야	해당영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 한다) • 금고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카드 제조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업
부동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소방시설 설계 등 방재 관련 건축설계에 한정한다)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방공사 감리 등 방재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재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교육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훈련기관 •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경비 관련 교육에 한정한다)
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기계 수리업 •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운영업

② 그 밖에 ①에 의한 경비관련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경비관련업

▶ p.52에 있는 표 내용 중 특수경비원 - 결격사유 - (1) - ④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①~③은 그대로 유지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⑤~⑩은 그대로 유지
-------	------	--

▶ p.53~56에 있는 표 내용 중 특수경비원 - 교육 - 교육 등 - (1),(2),(3),(4),(9),(14)를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특수경비원	교육	(1)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항].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②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1)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 (3)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	----	---

		<p>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 6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항].</p> <p>(4) (1)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3)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p> <p>(5)~(8)은 그대로 유지</p> <p>(9) 영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음[『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제1항].</p> <p>(10)~(13)은 그대로 유지</p> <p>(14) 영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함[『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3항].</p>
--	--	--

- ▶ p.56에 있는 표 내용 중 특수경비원 – 직무 – (6)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특수경비원	직무	<p>(1)~(5)는 그대로 유지</p> <p>(6)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6항].</p> <p>(7)은 그대로 유지</p>
-------	----	--

- ▶ p.67에 있는 표 내용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6)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p>(5)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p> <p>(6) 법 제18조에 따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p>
-------------------	---

- ▶ p.67에 있는 표 내용 중 허가증 등의 수수료 – (5)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허가증 등의 수수료	<p>(5) 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제4항].</p> <p>①~④는 그대로 유지.</p>
------------	--

- ▶ p.69~70에 있는 표 내용 중 경비업 허가의 취소 – (3)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경비업 허가의 취소	<p>(3)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음[『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p> <p>→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행정처분기준</p> <p>1. 일반기준</p> <p>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p> <p>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	---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법 제19조 제2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3.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 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은 때	법 제19조 제2항제4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 제2항제5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법 제19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법 제19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 제2항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 제2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 제2항제10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 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 제2항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 제2항제1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법 제19조 제2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4.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한 때	법 제19조 제2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5. 법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법 제19조 제2항제1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6.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법 제19조 제2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 p.72에 있는 표 내용 중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6)~(7)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해주세요. **(개정 2015.10.2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는 그대로 유지 (6)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